

KB자산운용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 안내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

1) 운용역 변경

대상 펀드	운용역	
	변경전	변경후
KB유럽배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부책임: 김혜미	부책임: 김세희/최영완
KBPIMCO글로벌인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KBPIMCO글로벌인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KB퇴직연금스타펀드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KB연금브릭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KB하이브리드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KB퇴직연금브릭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주1)		
KB멀티매니저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주1)		
KB러시아분할매수목표전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부책임 : 김혜미/최영완	부책임 : 김세희/최영완
KB베트남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KB베트남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KB이머징유럽증권자투자신탁(주식)		
KB롬바드오디에글로벌전환사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KB퇴직연금롬바드오디에유럽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KB롬바드오디에유럽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USD)(주식-재간접형)		
KB롬바드오디에골드에이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KB온국민TDF202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KB온국민TDF2025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KB온국민TDF203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KB온국민TDF203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KB온국민TDF204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KB온국민TDF204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KB온국민TDF20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KB온국민평생소득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KB온국민평생소득RIF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KB온국민평생소득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KB온국민평생소득RIF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KB롬바드오디에유럽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KBMENA증권자투자신탁(주식) 주2)		
KB러시아대표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주1)		
KB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주식) 주1)		
KB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주1)		
KB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주1)		
※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운용역의 주요 경력은 아래 표 참고 주1) 기타변경: 아래 2) 참조 주2)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운용역별 주요 경력]

운용역	주요 경력	운용역	주요 경력
김세희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상품관리팀 4년 8개월 블랙록자산운용 Investment 5년 피델리티자산운용 상품개발 3개월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1개월	최영완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컨설팅팀 3년 4개월 미래에셋생명 고객자산운용팀 4년 2개월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10개월

※ KB자산운용(www.kbam.co.kr) 홈페이지(공지/공시→공시정보)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공시」에서 해당 운용역의 과거 운용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변경

- KB 퇴직연금 브릭스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보수인출시기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제39조(보수) 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해지 ③ (생략)	제39조(보수) ① (좌동)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u>전부</u> 해지 ③ (좌동)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KB 멀티매니저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클래스 추가, 환매수수료 삭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① ~ ② (생략)</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39조(보수)</p>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① ~ ② (좌동)</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좌동)</p> <p><u>6.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u></p> <p><u>7.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u></p> <p><u>8. C-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u></p> <p><u>9.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u></p> <p>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 5. (좌동))</p> <p><u>6.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u>7.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u>8. C-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u>9.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② ~ ⑤ (좌동)</p> <p>제39조(보수)</p>

① ~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5. (생략)

제41조(환매수수료)

① (생략)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1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① ~ ② (좌동)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5. (좌동)

6.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8.5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8.5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

7.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8.5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4.25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

8. C-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8.5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8.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

9.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8.5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4.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

제41조(환매수수료)

① (좌동)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8년 04월 23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나. 2018년 04월 24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p>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7년 04월 14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나. 2017년 04월 17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p> <p>③ ~ ④ (생략)</p> <p>※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p>	<p>해당사항 없음</p> <p>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1 클래스 집합투자 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7년 04월 14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나. 2017년 04월 17일부터 <u>2018년 04월 23일 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u> 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p> <p>다. 2018년 04월 24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u>해당사항 없음</u></p> <p>3.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 투자증권, C-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퇴 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p> <p>③ ~ ④ (좌동)</p>
--	---	--

- KB러시아대표성장주증권투자신탁(주식) : 클래스 추가, 환매수수료 삭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 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략)</p> <p>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 1. ~ 13.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39조(보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p>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 ② (좌동)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좌동)</p> <p><u>14.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 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 용 집합투자증권</u></p> <p>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 1. ~ 13. (좌동)</p> <p><u>14.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② ~ ⑤ (좌동)</p> <p>제39조(보수) ① ~ ②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p>

	<p>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 13. (생략)</p> <p>제41조(환매수수료)</p> <p>① (생략)</p> <p>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퇴직연금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p> <p>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6년 10월 07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나. 2016년 10월 10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p>	<p>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 13. (좌동)</p> <p>14.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4.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제41조(환매수수료)</p> <p>① (좌동)</p> <p>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퇴직연금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8년 04월 23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나. 2018년 04월 24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p> <p>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6년 10월 07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나.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8년 04월 23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다. 2018년 04월 24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p> <p>3.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p>
--	---	---

③ ~ ④ (생략)	③ ~ ④ (좌동)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KB 아세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클래스 추가, 환매수수료 삭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① ~ ② (생략)</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5. (생략)</p> <p>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1. ~ 15.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39조(보수)</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 15. (생략)</p> <p>제41조(환매수수료)</p> <p>① (생략)</p> <p>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① ~ ② (좌동)</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5. (좌동)</p> <p><u>16.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u></p> <p>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1. ~ 15. (좌동)</p> <p><u>16.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② ~ ⑤ (좌동)</p> <p>제39조(보수)</p> <p>① ~ ② (좌동)</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 15. (좌동)</p> <p><u>16.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8.1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4.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제41조(환매수수료)</p> <p>① (좌동)</p> <p>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6년 05월 11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90일 미만: 이익금의 30%</p> <p>나. 2016년 05월 12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3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5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퇴직연금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6년 05월 11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나. 2016년 05월 12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3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③ ~ ④ (생략)</p>	<p>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6년 05월 11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90일 미만: 이익금의 30%</p> <p>나. 2016년 05월 12일부터 <u>2018년 04월 23일</u>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3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다. 2018년 04월 24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u>해당사항 없음</u></p> <p>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5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퇴직연금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6년 05월 11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나. 2016년 05월 12일부터 <u>2018년 04월 23일</u>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3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다. 2018년 04월 24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u>해당사항 없음</u></p> <p>3.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u>해당사항 없음</u></p> <p>③ ~ ④ (좌동)</p>
<p>※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p>	

- KB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클래스 추가, 환매수수료 삭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 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 (생략)</p> <p>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 1. ~ 15.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39조(보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15. (생략)</p> <p>제41조(환매수수료) ① (생략)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 클</p>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 ② (좌동)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 (좌동) <u>16.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u></p> <p>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 1. ~ 15. (좌동) <u>16.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② ~ ⑤ (좌동)</p> <p>제39조(보수) ① ~ ②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15. (좌동) <u>16.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8.5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4.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제41조(환매수수료) ① (좌동)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 클</p>

	<p>래스 집합투자증권,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퇴직연금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A-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30일 미만: 이익금의 10%</p> <p>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1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6년 05월 27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p> <p>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나. 2016년 05월 30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p> <p>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p> <p>③ (생략)</p>	<p>래스 집합투자증권,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퇴직연금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A-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8년 04월 23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p> <p>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p> <p>나. 2018년 04월 24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p> <p>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1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6년 05월 27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p> <p>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나. 2016년 05월 30일부터 2018년 04월 23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p> <p>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p> <p>다. 2018년 04월 24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p> <p>3.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p> <p>③ (좌동)</p>
<p>※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p>		

- KB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클래스 추가, 환매수수료 삭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 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략)</p> <p>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 1. ~ 13.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39조(보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13. (생략)</p> <p>제41조(환매수수료) ① (생략)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P 클레</p>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 ② (좌동)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좌동) 14. <u>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u></p> <p>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 1. ~ 13. (좌동) 14. <u>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② ~ ⑤ (좌동)</p> <p>제39조(보수) ① ~ ②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13. (좌동) 14. <u>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8.5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4.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8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제41조(환매수수료) ① (좌동)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P 클레</p>

	<p>스 집합투자증권 및 C-퇴직연금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p> <p>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1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6년 10월 07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나. 2016년 10월 10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p> <p>③ ~ ④ (생략)</p>	<p>스 집합투자증권 및 C-퇴직연금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8년 04월 23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나. 2018년 04월 24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p> <p>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1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6년 10월 07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나.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8년 04월 23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 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다. 2018년 04월 24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p> <p>3.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p> <p>③ ~ ④ (좌동)</p>
<p>※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p>		

2. 변경(예정)일 : 2018년 04월 23일